

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-6호

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· 고시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4일

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



-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: 2024년 12월 4일
-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현황

학교명	위치	보호구역 면적(m ²)		변경내용
		절대	상대	
삼봉유치원	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04-1	12276.71	177629.61	2024. 3. 1. 개원

-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

-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-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*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보호구역에 해당됨

-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: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
- 고시 내용: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,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, 보호구역 편입필지 현황
- 고시 방법: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(<https://office.jbedu.kr/jbwje>)
- 기타 문의사항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담당(☎063-270-7634)